

투자설명서 변경 내용

□ **대상펀드명** :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30퇴직연금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효력발생일** : 2016. 1. 20.

□ **정정 사유**

(1) 운용전문인력 변경(김진성, 문성호 → 최영철, 이무광, 문성호)

(2)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 **정정 내용**

항목	정정전	정정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	김진성, 문성호	<u>최영철, 이무광</u> , 문성호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2015.3.31. 기준	<u>2015.12.31. 기준</u>
5. 운용전문인력		<u>김진성 :</u>
나.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u>2014.02.10~2016.01.19.</u> <u>최영철: 2016.01.20.~현재</u>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u>다)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위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하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다만, 부도 등으로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함</u>
가. 투자 대상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 -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3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채권 신용등급 하락 관련 조치 사항 반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나)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나. 투자제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3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2) 자산총액의30%까지 투자: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안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제외) 및	(2) 자산총액의30%까지 투자: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안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제외) 및 직
2) 동일종목 투자		



트러스톤자산운용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지급을 보증한 채권·어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u>기업어음증권</u> 및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지급을 보증한 채권·어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u>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u>,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u>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u>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3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나)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u>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u>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5) 집합투자증권 투자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u>채권운용전략 상세 기재</u>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반기 기준으로 갱신	<u>2015. 9.16. 기준</u>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반기 기준으로 갱신	<u>2015. 9.16. 기준</u>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반기 기준으로 갱신	<u>2015. 9.16. 기준</u>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법 개정사항 반영	<u>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령 제80조제1항제3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 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u>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채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 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채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u>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u> ,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 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법 개정사항 반영	<u>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령 제80조제1항제3호의</u>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
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